

대출청약철회 안내

청약철회란?

본 제도는 고객이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이자 및 대출실행에 따른 부대비용을 반환할 경우 대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철회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대출 원금, 이자 및 대출실행에 따른 부대비용을 모두 위 철회기한 이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출청약 철회권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상 상품 : 보험계약대출

◆ 대출청약 철회 기한

①대출계약체결일, ②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대출 청약 철회 가능

◆ 대출청약 철회 진행절차

대출청약 철회신청 → 대출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반환 → 대출청약 철회 완료 (대출청약 철회 효력 발생)

◆ 기타 유의사항 안내(중도상환과의 차이, 대출청약철회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 보험계약대출 청약은 중도상환 되더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개인신용평점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청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점 관련 정보가 삭제되어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출청약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납부한 인지세가 있는 경우 해당 인지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